

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신설 2019. 3. 25.>

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사업자의 업종 및 규모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업종: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
 - 가. 식료품 제조업
 - 나. 음료 제조업
 - 다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
 - 라.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 - 마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
 - 바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
 - 사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 - 아.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 - 자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- 차. 1차 금속 제조업
 - 카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
 - 타.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- 파. 전기장비 제조업
 - 하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 - 거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 - 너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- 더.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 - 러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
2. 규모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
 - 나.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(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)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